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61호
----------	------

제 출 일 자 2004. 11. 29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·시행으로 방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와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과 관련한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 기구·인력 보강지침이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,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승인된 인력(10명)을 증원하고,
- 나.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시정원(2명)이 2004년 6월 30일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, 정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며,
- 다. 또한,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기구 인력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,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
 - 1)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 : 814명 → 822명 (8명 증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798명 → 806명 (8명 증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6명(현행유지)
 - 2) 승인정원 : 10명

- 읍·면 방재인력 : 8명 (8급 4, 9급 4)

-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: 1명 (8급 1)

-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인력 : 1명 (6급 1)

3) 한시기구 인력 : △2명

-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 : △2명 (7급 1, 8급 1)

나. 한시정원 재규정

1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: 12명 → 10명 (△2명)

○ 존속기한

- 1명(행정5급 1) : 2004.6. 30 → 2005. 6. 30 까지(1년 연장)

- 2명(전산7급1, 전산8급1) : 2004. 6. 30 까지 ⇒ 기한도래 삭감

- 6명(토목·건축5급1, 토목8급1, 환경8급1, 건축9급1, 농업9급1, 기능10급1)
→ 2006. 12. 31 까지

- 3명(행정6급1, 행정7급1, 행정 8급1) : 2007. 6. 30 까지

○ 분야별 한시정원

-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(1명) : 주민자치과 행정5급1 ('05.6.30 까지)

-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(6명) : 행정타운사업소 토목·건축 5급1,
토목8급1, 환경8급1, 건축9급1, 농업9급1
기능10급1 ('06. 12. 31까지)

- 혁신분권 전담인력 (3명) : 기획담당관실 행정6급1, 행정7급1, 행정8급1
('07.6.30 까지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 814명 ” 을 “ 822명 ” 으로 하고, 같은조제1호중 “ 798명 ” 을 “ 806명 ” 으로 한다.

조례 제479호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
2. 6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3.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조례 제479호 부칙 제2항제1호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14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798명</u> 2. (생략)</p> <p>부 칙(제479호)</p> <p>① (생략) ② 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<u>2004년 6월30일까지로, 6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,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그 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</u></p>	<p>제2조(-----) ----- -----<u>822명</u> -----,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: <u>806명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(제479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(-----)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1. <u>1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 한다.</u></p> <p>2. <u>6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3. <u>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</u>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I 읍면 방재인력 보강 승인 (행정자치부 2004. 6. 14)

- 국가재해·재난 관리체계 개편 등으로 읍면의 방재 업무량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인력보강
- 승인정원 : 8명(8급4, 9급4)

II 국가기본체계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 (행정자치부 2004. 9. 8)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본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,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 보강
⇒ 중앙 - 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
- 기 능
 - 위험지구 설정
 -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
- 승인정원 : 1명(8급1)

III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·인력보강 (행정자치부 '04. 11.3)

-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과 관련, 전담기구가 없어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
- 소관부서 : 전담기구 소속은 공무원인사, 후생·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총무과에 설치
- 기구·정원 : 1담당 3명 원칙
- 인력 승인 : 1명(6급1)

IV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(행정자치부 '04. 6.29)

-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 : 기한 만료시, 인력 4~5명
- 한시기구(주민자치과) : 개정중인 「여유기구제」로 운용 가능
-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 까지 한시기구 시한연장 가능 : 2005. 6. 30일 까지(1년간)